

번역

기억할 의무인가, 잊을 권리인가: 기억 조작과 법*

엄 주 희**

목차

I. 서론	V. 책임에 미치는 영향
II. 기억 개입 기술	VI. 기억과 양심
III. 기억의 윤리학	VII. 증진시킬 의무
IV. 기억과 법	VIII. 결론 및 방향

Ⅰ 국문초록

최근 몇 년 동안 기억에 대한 신경과학 연구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비록 그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기억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기억 현상의 과정은 부호화, 저장(응고화), 상기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망각의 경우는 정상적인 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9S1A5A2A03053179)

본고의 원문은 “Christoph Bublitz, Martin Dresler, A Duty to Remember, a Right to Forget? Memory Manipulations and the Law” (DOI: 10.1007/978-94-007-4707-4_167. In book: Springer Handbook of Neuroethics, pp.1279-1307)이다. 원저자인 독일 함부르크 대학 법과대학의 Christoph Bublitz 교수와 막스 프랑크 정신의학 연구소의 Martin Dresler의 번역 승낙을 받아, 저작권을 보유한 출판사 Springer Nature에 번역 관련 저작권료를 지불한 후 이를 번역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로 만든 번역 논문이다. 신경과학과 법학의 접점을 연구하는데 있어, 앞선 연구 성과들로서 영감을 주시고 번역 논문 출판을 격려해주신 Christoph Bublitz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건국대학교 법학전공, 조교수, 법학박사

논문접수일 : 2021. 1. 17., 심사개시일 : 2021. 1. 29., 게재확정일 : 2021. 2. 15.

준에서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정신적 결핍으로 간주 될 수 없다. 기억과 망각은 각각의 개별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인 과정으로 기능한다.

신경 현상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넘어 기억과 망각과 관련된 신경과학 연구는 의도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한 개인의 기억에 대한 외부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윤리적 도전이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억의 윤리적 문제에 관하여 미국에서 발간된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의 비욘드 테라피 보고서(Beyond Therapy)를 심도 있게 검토한다. 이 보고서는 인위적인 기억의 변화를 반대하는 생물 보수적(bio-conservative) 입장을 취하여, 자아정체성, 인격, 책임감, 자기 성장에 관한 도덕적 요구에 비추어 “적절하고 진실하게”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개인과 사회의 의무에 대해 호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본고는 현명하지 못한 기억 조작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험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기억을 의도적으로 수정할 개인의 도덕적 권리를 위한 규범적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적인 분석을 통하여, “기억의 자유”라는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면서 기억과 기억 조작과 관련된 자유권 개념을 다룬다. 삭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한 기억할 권리, 기억을 증진시킬 권리, 잊을 권리 등으로 기억의 자유의 범위와 내용을 제시하고 그 법적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미래의 기억 개입 기술의 발전은 한 개인의 기억을 마음대로 지우거나 조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집단기억과 증인의 증언과 같은 사회적 법익과 관련한 기억할 의무와 책임, 기억과 양심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기억을 증진시킬 사회적 의무에 관한 논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기억, 망각, 기억 조작, 기억의 윤리, 기억할 권리, 기억과 법, 잊을 권리, 기억을 증진시킬 권리

I. 서론

기억은 놀라운 능력이다. 그것은 과거의 경험들에 비추어 과거를 표상화시킬 수 있으며 미래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좀 더 흥미진진한 표현으로, 기억은 “정신적 시간여행”(Tulving, 1985)이라 불리기도 한다. 또한 “앞쪽에 봉랍이 찍힌 무(無)의 존재(the presence of an absent thing stamped with the seal of the anterior)” (Ricoeur, 2004, p.17) 라고 불리기도 한다. 기억은 하나의 개체가 아닌 다면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기저에 서로 다른 신경생리학적 현상들이 있는, 기능적으로 분리되면서도 밀접한 능력들의 집합이다. 이러한 신경생리학적 현상들은 고전적 조건형성(古典的條件形成; classical conditioning) 등의 기본적 학습능력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살아온 삶의 행적들을 추억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의 기억 모형들은 여러 시스템들을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LeDoux 2007). 서술적 기억(declarative memory)은 쉽게 말로 서술될 수 있는 의미론적, 자전적, 그리고 일화적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달리 비서술적 기억(non-declarative memory)은 운동(motor) 혹은 지각(perceptual) 능력을 저장하며,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건적 자극-반응(stimulus-response) 패턴을 저장한다.¹⁾ 그러므로 “기억하다”라는 동사는 하나의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습득된 절차적 기술 및 사실 기반의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lving Tulvig이

1) 역자주: 서술적 기억(외현 기억)은 세상에 관한 지식으로 의식적으로 접근하여 보고가 가능한 기억이고, 비서술적 기억(암묵 기억)은 절차기억, 기술학습, 지각적 점화, 조건형성, 습관화나 민감화 같은 단순 학습행동들을 포함하는 기억으로서 의식적 접근이 되지 않는 기억을 말한다. 이정모, 인지과학 - 학문 간 융합의 원리와 응용,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8, 446-447면.

자각적 의식(autoegetic consciousness)이라고 명명한 현상학적 성질로 과거를 다시 경험하는 능력으로도 구성되어 있다(Tulving, 2002). 본고에서는 주로 후자의 능력에 집중할 것이다.

일시적 단계 및 과정들 간에도 추가적인 구분이 도출된다. 기억의 내용은 습득되며, 저장되며, 다시 불러내어진다. 그에 따라, 기억의 주요 세 단계들로는 부호화(符號化; encoding), 저장(또는 응고화; consolidation) 및 상기(retrieval)가 있다. 부호화 직후, 기억 흔적(記憶痕跡; memory trace)들은 불안정하며 급격히 부식되기 쉽다. (지각 직후와 같은) 작업 기억(作業記憶; working memory)의 대부분 내용들은 그 이상 처리되지 않는다. 일부만이 장기 기억(long-term memory)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저장 과정에서, ‘engram’이라고도 불리는 신경의 기억 흔적들은 체계화되며 안정화된다. 기억들이 정확히 어떻게 저장되는 것인지는 아직까지 불가사의로 남아 있으며, 기억 흔적 관련 연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Thompson, 2005; Hübener & Bonhoeffer, 2010). 일단 지금껏 밝혀진 바로는, 기억이 쉽게 뇌 특정 부위에 국한 지을 수 있는 구조물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억의 기저에는 다양한 뇌 부위를 걸쳐 형성된 망과 신경 세포들 간의 시냅스 가소성(synaptic strength)이 있는 것이다. 저장 및 응고화 라는 용어는 기억의 내용들이 변화에 무감각하며 상기 단계 전까지는 비축 상태에 있는, 뇌 속에 영구히 고착화된 흔적들이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렇게 고정성을 부각하는 설명은, 기억의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성질을 간과한다. 상기 과정에서, 때로는 의도적인 노력에 따라,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기억 흔적들은 일시적으로 다시 침식되기 쉬운 상태가 되며, 이후 또 다른 응고화 과정을 걸친다(이를 재[再]응고화[reconsolidation]라고 부른다.)(Dudai, 2012). 인체에서 일어나는 재응고화 현상은 아직까지 논

쟁 및 연구 대상이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Schiller & Phelps, 2011; Nader & Einarsson, 2010). 두 시간 남짓인 짧은 재응고화 시간 동안, 기억들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며, 현존하는 지식에 따라 갱신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재응고화는 (변화된 기억으로 ‘덮어 쓰인’ 최초 자각의 내용이 아니라) 과거에 대하여 가장 잘 기억하는 내용이 그것에 대한 가장 최신의 기억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결과,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변화될 수 있게 된다. 기억은 처음 부호화된 자극의 복사본이 아니다. 즉, 고대시대에 밀랍을 칠한 서자판(書字板)이나 현대의 컴퓨터 데이터 저장장치와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 기억은 도리어 반복되는 재구성 과정으로, 변화와 오염에 취약하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관적 경험으로, 우리는 기억이 유동적이고 잠재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 기록된 정보의 반복이라는, 확신에 가득 찬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기억을 논의할 시 우리는 똑같이 흥미롭고 중요한 과정인 망각을 논의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망각은 그 정의에서부터 여러 문제들을 제기한다. 설단 현상(舌端現象; tip of the tongue)²⁾처럼 우리가 무언인가 순간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망각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Nietzsche가 고민했듯이, 망각이 일어나긴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냄새, 소리, 광경 같은 자극들은 그것들의 부재에서 우리가 불러낼 수 없었던 강력한 기억들을 불러내기도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지속적

2) 역자주: ‘설단 현상’은 심리학 용어로서, 기억으로부터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아는 것인데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안 나오는 것과 같이 순간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으로 발견할 수 없는 기억 흔적들도 특정 환경적 조건들에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것이다 (Cf. Roediger III et al., 2010). 기억과 같이 망각은 다면적인 현상으로, 그것에 관한 이론들은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 초기 응고화 과정에서의 오류, 역행성 간섭³⁾(retroactive interference), 시간 변화에 따른 기억 흔적의 침식, 상기 억제 현상(retrieval inhibition) 등 망각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Wixted, 2004; Schacter, 2002).

망각은 단순히 인지적 결함으로서만 이해돼서 안 된다. 망각은 그 실용적 측면에서 사고 기능에 유용하며, 이는 기억 기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것이 기억 가치가 있는 내용들만 걸러냄으로써 정보 과부하를 방지하기 때문이다. 망각이 없다면, 우리는 기억의 천재 푸네스(Funes the Memorious)와 같은 운명에 처했을 것이다. 그는 Luis Borges가 창작한 가상의 인물로, 아무것도 망각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Borges et al., 2007). 푸네스처럼 아무것도 잊지 못한 채 과잉기억 증후군(hyperthymestic syndrome)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실제로 존

3) 역자주: ‘역행성 간섭’은 새로이 학습된 또는 새로이 입력된 정보가 그 이전즉, 과거에 학습 또는 입력과정을 거쳐 이미 저장되어 있던 기억정보 또는 기억자료를 회상하는 활동[또는 능력]을 간섭하는 현상을 말한다. 로프터니와 잔니 (Loftus, E. F., & Zanni, G. (1975) Eyewitness testimony: The influence of the wording of a question,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5, 86-88)는 심리학 실험을 통해 재판에 위해 원고나 피고나 증인을 재판 이전에 예비 심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검사가 질문에 도입했던 내용이 이들의 기억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혔다. 후속 질문이 원래의 기억 내용의 기억을 떨어뜨린 것이다. 이는 새 추가 정보가 이전의 옳은 정보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변화시킨다기 보다는, 옛 정보의 인출을 더 어렵게 해서 기억이 잘 안 된다는 것이 간섭이론이다. 즉 유사한 자극정보를 새로 학습하면 이것과 옛것과 간섭이 일어나 망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정모, 인지과학 - 학문 간 융합의 원리와 응용,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8, 452면.

재한다(Parker et al., 2006). William James는, “정신이라는 배는 선별(또는 선택)이라는 용골(龍骨)로 지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의 경우, 그 유용성은 명확하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했더라면, 마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곤궁하게 보냈을 것이다”라고 서술한 바 있다(James, 2007, p.680). 과잉 기억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정밀한 기억이 이롭지만은 않다. Freud가 제시한 억압 및 심리적 방어기제 관련 이론들 없이도, 과거에 대한 지나친 의식이 현재의 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다.⁴⁾ 불쾌하거나 부끄러운 순간들을 모두 기억하는 것은 개인의 안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특히 자전적 기억이 선별적인데, 특정 기억들의 희석 또는 강화는 일관적이고 긍정적인 자의식(self-image)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Conway, 2005).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적 망각은 과거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들기도 한다(Harris et al., 2010, p.254). 그러므로 기억과 망각은 상호보완적인 과정들이며, 우리는 그 중 하나도 과대평가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

II. 기억 개입 기술

기억 관련 연구를 다루었던 간략한 서론에서 넘어와서, 이제 규범적 목적들에 맞게 기억을 조작하려는 개입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억에 우리가 의식적 차원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음은 말할 나위 없이 자명하다. 최근 몇 년간, 새롭게 습

4) 현대적 관점에서 억압 이론을 검토한 문헌으로는 Erdelyi (2006).

득한 최신 기억 흔적들의 운명을 결정 짓고, 더 나아가 이전 기억 흔적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개입들이 연구되어왔다. 비록 연구 대부분이 초기 단계에 있으나, 기억 체계의 작동 방식에 관한 새로운 통찰들과 새로운 개입 기술들이 기억 조작을 가능케 하리라는 전망은 이론상 타당해 보인다.⁵⁾ 기억 연구자들을 들뜨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안전 및 윤리적 문제들로 인하여 동물들에게 시도되는 많은 개입들이 인간들에게는 결코 시도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기억 조작 목적의 개입들과 관련하여, 세 가지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 번째 목표는 부호화 및 상기 능력을 개선함으로써 기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기를 방지하거나, 기억 흔적들을 지우거나, 감정적인 내용들을 희석시킴으로써 기억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억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억 관련 개입들은 기억 습득 이전, 기억 습득, 응고화, 상기 등을 포괄하는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다. 또한 흥미롭게도, 상기 이후 재응고화 과정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특정 기억 기능들에 결함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 관한 사례보고(事例報告)들에 따르면, 특정 기억 체계들만 선별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짐작된다.⁶⁾

늘어나고 있는 연구들은 여러 다른 방법들로 기억 기능을 개선시키고자 하며, 대부분 정보 부호화·응고화를 개선하는 방식을 취한다. 여기서 기억 기능을 개선시키는 자연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는 노르아드레날린(noradrenalin), 코티

5) 특정 기억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존재할 것이다. 예로 Levy (2007), Ch. 5.

6) 가장 유명한 환자는 최근 사망한 H.M.이다. Corkin (2002).

솔(cortisol)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증가로 이어진다. 노르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은 부호화와 응고화를 향상시키지만 상기를 저해시킬 수도 있다(Joëls, et al., 2011). 통용되는 일부 약물들은 그 적용 시기에 따라 기억 기능을 향상시킬 수도, 저해시킬 수도 있다. 일례로,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은 부호화 이전 복용 시 선행성(先行性) 기억상실을 유발하지만, 부호화 이후 복용 시 역행성(逆行性) 기억을 향상시킨다(이는 이후 유입되는 정보로 인한 혼선을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Beracochea, 2006). 공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기억 향상에 관한 논쟁은 주로 제약(製藥)에 집중되어 있으나, 현재 사용되는 약물 대부분이 인상에 남을 정도로 기억에 이로운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Repantis, 2010a, b; Husain & Mehta, 2011; Lynch et al., 2011). 여러 제약 외 수단들은 약물만큼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예들로는 영양제, 운동, 수면, 기억전략 훈련(mnemonic strategy), 뇌 자극 등이 있다.⁷⁾

기억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도 여러 다른 방법들이 존재한다. 망각은 보통 의도되진 않지만 기억 대부분의 자연스러운 운명이다. 한편으로 선별된 기억들을 의도적으로 망각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여러 표징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을 “지시 망각(directed forgetting)”이라고 명명한다(Geraerts & McNally, 2008). 조건화된 공포(conditioned fear) 같은 정서적 기억들과 관련해서는, 공포 소멸(fear extinction) 같은 학습 해소 훈련들(unlearning procedures)이 오랜 전부터 개발되었으며, 최근 들어 다시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

7) 전반적 비평을 위해선 Dresler et al. (2012); 영양 관련해서는 Smith et al.(2011), Nehlig (2010) ; 운동 관련해서는 Roig et al. (2013), Hötting and Röder (2013) ; 수면 관련해서는 Rasch and Born (2013), Genzel et al. (2014); 기억전략 훈련 관련해서는 Karpicke and Roediger (2008), Worthen and Hunt (2010); 뇌 자극 관련해서는 Coffman et al. (2014), Suthana and Fried (2014).

나 공포 소멸 훈련들이 기억 흔적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 학습된 안전 관련 기억으로 그것들의 상기를 방지할 뿐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Myers & Davis, 2007; Vervliet et al., 2013).

개입들의 주요 대상은 기억들을 수반하는 감정들이다. 특히 정신적 외상을 일으킬 만한 사건들과 결부되어 있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감정들이 개입의 주요 대상이다.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 대다수는, 기억에 담긴 정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체적 기억과 분리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수면이 중요한 역할을 하나(Walker & van der Helm, 2009), 일부 사람들의 경우, 불안, 쉽게 반복되며 억누르기 힘든 끔찍한 사건에 관한 기억, 플래시백(flashback), 감정적 무감각, 각성과민(覺醒過敏), 행동 변화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생리적 상태인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된다.⁸⁾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인 기억들은 정신적 외상을 일으킨 사건 동안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이 야기한 것으로, 이러한 기억들은 기억 흔적들의 과(過)응고화(overconsolidation)로 이어진다(Pitman, 1989; Glannon, 2006). 대부분의 치료법들은 기억의 사실적 내용과 결부된 이런 강력한 감정들을 무디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본래 있던 기억 흔적이 대체되지 않고 그것의 상기만 방지되는 한, 재발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된다(Vervliet et al., 2013). 새로운 개입 방법들은 PTSD를 방지하고 치료하는 새로운 길을 열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구조대원의 경우처럼) 정신적 외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들을 경험하기 전이나, 성폭행 등의 정신적 외상을 일으키는 사건을 경험한 직후의 사람들에게 약물이 투여될 수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정신적 외상과 관련된 기억들

8) PTSD의 생물학적 측면 관련해서는 Pitman et al. (2012).

이 재[再]활성화되면서 재응고화되는 과정에서도 임상적으로 투여될 수도 있을 것이다(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2003; Donovan, 2010; Poundja et al., 2012; Schiller et al., 2010). 정서적 기억들의 응고화 및 재응고화 과정은 베타 억제제(β -adrenergic blocker)인 프로프라놀롤(propranolol)에 의해 성공적으로 타겟이 된 바 있다(Cahill et al., 1994; Kindt et al., 2009). 시험적 연구들에서는 응고화·재응고화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성공적으로 PTSD 관련 증상들을 줄일 수 있었으나, 더욱 큰 규모에서 행해진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효과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Pitman et al., 2002; Vaiva et al., 2003; meta-analysis by Lonergan et al., 2013). 이러한 류의 개입들이 단순히 정서적 측면들만 축소시키는 것인지, 사실에 관한 기억의 상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는 현재로서 불분명하다.⁹⁾

기억 조작의 가장 강력한 형태는 기억을 온전히 지워버리는 것이다. 개입의 첫 단계에서는 초기 응고화를 막아야 하는데, 이는 단기 기억 속 정보가 안정화되어 장기 기억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다른 단계들에서 개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회상 이후 불안정 단계에서 재응고화 과정은 조작되거나 방지될 수 있다(Pitman 2011; Parsons and Ressler 2013).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들에서는, 기억 관련 뇌 부위들에서 일어나는 단백질합성(蛋白質合成)을 억제함으로써 응고화 및 재응고화가 방지될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Dudai 1996; McGaugh 2000; Nader et al., 2000;

9) 일부 연구자들은 “감정적 기억 지우기”를 언급하는데 이는 감정적 측면의 삭제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윤리학자들은 구별 없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무디게” 만드는 것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적 모호성은 오해를 낳을 수 있으며 기억 흔적 개념에 기인한다. Holmes et al. (2010). 현재의 목적 관련하여, 적어도 특정 수준에서 감정적이고 사실적 내용들에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서로 분리되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

Alberini et al. 2006; Shema et al. 2007; Sacktor 2008).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회상 직후 감정 관련 혐오 자극(aversive stimulus; 嫌惡 刺戟)이나 전기 충격 요법(electroconvulsive therapy) 등을 적용할 경우, 일화 기억¹⁰⁾의 재응고화 과정에 지장을 주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Strange et al. 2010, Kroes et al. 2014).¹¹⁾

개입의 또 다른 형태는 기억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우리 경험의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응고화시키고 이런 기억 흔적들을 반복적으로 재응고화시키는 과정은, 우리의 기억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실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흥미로운 시각은 거짓된 기억에 관하여 행해진 많은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특히 Elizabeth Loftus가 수행한 연구들을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들에서는 과거에 대하여 거짓된 이야기들을 들려주거나 암시가 담긴 질문들을 물어보는 등의 다양하고 상당히 단순한 수단들을 통하여 기억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기억들이 심어질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Loftus 2003; Brainerd and Reyna 2005).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분자 수준의 정교한 광유전적 개입(optogenetic intervention)을 통해 거짓 기억을 이식될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Ramirez et al. 2013). 현재로서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원래 경험과 얼마나 다른지의 정도는 확실하게 가늠될 수 없다. (대체로) 정확한

10) 역자주: 일화 기억(episodic memory)은 개인이 경험하는 각종 사건들, 일화들에 대한,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억이다. 삭터와 투빙(Schacter, D. & Tulving, E (1994) What are memory system of 1994? In D. Schacter & E. Tulving (Eds), *Memory systems 1994* (pp.1-38). Cambridge: MIT Press)은 장기기억 중에서 기억 내용 중심으로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semantic memory)으로 구분하였다. 의미 기억은 일화적 경험이 쌓이고 이것이 추상화되어 이루어진 일반지식의 기억이다. 각종 어휘, 언어적 개념들, 일반 세상사 등에 대한 지식이다.

11) 현재로서는 동물 실험보다 인간 대상 임상시험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재응고화 과정에서 다른 기억 체계들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복잡성에 기인한다; 검토를 위해선 Schiller and Phelps (2011).

기억 속에서 거짓된 부분들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또는 거짓된 기억들의 전체적인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거짓된 기억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는 많은 기억들이 사실상 거짓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추정상 인간은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자연선택(自然選擇; natural selection)을 통해 우리의 기억 체계가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을 것이다(Schacter 1995, p.25).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Loftus가 수행한 연구들은 기억에 관한 불신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아무리 생생하고 익숙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기억들이 진실인지 결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부터 법적 함의들이 도출될 수 있는데, 목격자 증언이나 심문 절차를 평가함에 있어서 특히 그러하다(Schacter and Loftus 2013;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2008; Nadel and Sinnott-Armstrong 2012).

Ⅲ. 기억의 윤리학

기억의 윤리학은 아직까지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흥미로운 주제이다(Cf. Blustein 2008; Margalit 2002).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기억해야 하는가 -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예를 들어,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강렬하게 고인이 된 우리의 친족들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에 관하여 기억의 의무를 지니는가? 우리 자신인가 아니면 기억되는 사람인가? 우리는 특정 인물 혹은 사건들을 잊기 위해 애써야 하는가? 아니면, 이에 대조적으로, 신호 및 증거를 제작하여 기억의 자연스러운 쇠퇴를 방지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들은 포괄적인 하나의 질문으로 묶을 수 있다: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가 적합한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술이 기억 및 망각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더욱 부여하는 시대에 살게 되면, 기억 및 망각은 선택의 문제가 되며 기억의 윤리학은 중요한 의제가 된다.

자연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전망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작가 및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¹²⁾ 다른 종류의 개입들은 각자 다른 질문들을 낳을 뿐 아니라 그것 자체로 심도 있게 분석되어야 하겠지만, 특정 윤리적 난제들은 모든 종류의 개입들에 적용된다. (막연히 기억을 “변경시키는” 일을 말하고 있다.). 개인의 차원에서, 대조적인 지향점을 가지는 두 가지 입장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역사적 진실성에 가치를 둘 때 우리는 과거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들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스스로를 알라”라는 고대의 격언 같은 현저한 윤리적 사상들로 뒷받침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행복 및 안녕에 가치를 두게 될 경우, 우리는 진실성보다는 불쾌한 기억들을 지워버리는 등 기억을 변경시키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입장에 비추어볼 때, 기억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도 잠재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윤리적 이상들을 실현시키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의 입장이 표명된 좋은 예시는 미국의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이하,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 또는 ‘위원회’로 칭한다)가 발간한 보고서인 “비욘드 테라피 보고서”(Beyond Therapy)이다. 이 보고서는 기억 조작의 잠재적인 장점과 위험 등을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12) Eternal Sunshine of the Spotless Mind 같은 영화들이 있다.

다루었으며, 이러한 주제를 학문적 의제로 삼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고서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그것의 생명보수적(bio-conservative)인 입장과 (시사하는) 결론들 때문이다.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는 모든 종류의 기억 조작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것이 PTSD 증세를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기억들을 무디게 하는 일일지라도 말이다: “우리의 기억들이야말로 우리를 우리로 만든다. 어쩌면 약리학적 수단으로 기억을 ‘다시 씌우므로써’ 실질적인 고통을 완화시킬 수는 있겠으나, 그에 따라 세상에 관한 우리의 인식을 왜곡하고 진정한 정체성을 허물어버리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p.227).¹³⁾

1. 알맞고 진실되게 기억하기

미국의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는 윤리적 기준으로 “알맞고 진실되게 기억(remembering fitly and truly)”(p.228)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동시에 유감스럽게도, 위원회는 “알맞고 진실됨”의 정의는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으며, 그것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알맞음과 진실됨이라는 두 기준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존재하는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가장 정확한 해석을 추정해보자면, “알맞고 진실됨”은 적절하고 정확하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억을 왜곡하거나 지우거나 희미하게 만드는 행위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언뜻 보기에 이는 타당한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보자. 정확하게 기억하기라는 의무를 수행하려 할 때 우리는 인간의 기억이 선별적이고 왜곡되어 있다는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정확성을 강조하게 될 경우, 우리에게 쉽게 잊

13) Parens (2010). 그는 위원회가 PTSD 치료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혀지는 기억들을 되새기며 과거를 낭만화시키거나 미화시키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회상의 정확성을 개선하고 왜곡적인 효과들을 감소시키는 개입들은 지지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것은 보고서의 요점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 보고서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능력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개입에도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알맞게 기억함”에 관하여 Eric Parens가 제시한 다음의 해석은 유용하다: 기억의 강렬함과 그에 수반되는 감정들은 그것들을 촉발시킨 사건의 중대성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Parens 2010). 이러한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명백하게 불균형이 존재하는 사례들을 어떻게든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 및 그에 적합한 (감정적) 반응들을 평가하는 일은 그 자체가 가치 판단으로서 더 심도 있는 표준들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친구의 죽음, 친밀한 관계의 단절, 혹은 민망한 경험 같은 사건에 적합한 반응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발생할 수 있다. 선불리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며 누구의 기준에 맞추어 대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Cf. Henry et al. 2007, p.17). 이 문제는 특히 깊고 오래 지속되는 슬픔, 평범한 일상에 대한 불신 혹은 흥미상실 등,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기억들에 관한 반응들에 있어서 중요하다. 전쟁 참여, 성폭력 같은 이전 사건들과 결부 지어서 이것들은 상당히 적합한 반응들일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한 경험들을 겪고도 우리가 어떻게 단순히 일상으로 돌아와 삶을 즐겁게 누릴 수 있겠는가? 이런 류의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이나 그들의 기억으로 고통 받는다 하더라도,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보았을 때 그들의 반응이 명백히 불균형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기억들의 문제는 그것들이 과거 경험에 부적

합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들이 비참한 미래의 삶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알맞음”과 “기능성(functional)”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이긴 하지만 그 가리키는 지점들에 있어서 다르다. 과거에 비추어보았을 때 적합한 것과 미래의 번영적인 삶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는 세 번째 윤리적 이상으로 논의를 이끄는데, 바로 행복의 추구(pursuit of happiness)이다. 위원회는 알맞고 진실되게 기억하는 것이 번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의심해볼 만한데, 특히 트라우마를 수반하는 기억들에 있어서 그러하다. 위원회의 주장의 기저에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는 즐거움의 감정들과는 다른 것이며, 주관적인 감정들과 세계 간의 일관성에서 비롯된다. 물론 우리가 현실과의 단절로만 얻을 수 있는 인위적인 행복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아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한 행복은 Theodor Adorno가 남긴, 거짓된 삶에서 진정한 살아 있음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격언과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상적이고 거짓된 의식상태에 대해 불신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억들은 심신을 약화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내며, 기억 조작이 과거로부터 비롯된 내면의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긴 어렵다. 기억 조작의 결과로 도출되는 번영의 삶은 향유되지 않아야 할 만큼 “현실적이지 않고”, “거짓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위원회는 행복과 알맞고 진실되게 기억하는 것이 서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들이 잠재적으로 상충될 수 있는, 서로 다른 가치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실질적인 난제가 등장한다: 삶의 번영을 누릴 수 없게

만들더라도 알맞고 진실되게 기억해야 할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인가?

2. 정체성

위원회의 주장의 배경에는 기억 조작이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는 근심이 담겨 있다. 우리의 자전적 기억들이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것은 물론 사실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들만의 것인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며, 자전 (autobiography), 즉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접근 통로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억 각각의 중요성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도 다양한 것들과 사건들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린다. 이러한 현상과 의도적인 망각 간의 어떤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심사숙고 끝에 내린 기억을 지우고자 하는 결정도 그 자체가 개인의 인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윤리적 논쟁들에서 정체성에 대한 우려는 자주 논의되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맥락에서 여러 다른 의미들을 식별하는 것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정체성의 가장 강력한 형태는 통시적(通時的; diachronic) 정체성으로, 한 개인의 지속적인 존재를 규명한다. 즉, 시간 상의 한 지점에서 특정인으로 식별된 사람이 다른 지점에서 동일인으로 재식별될 수 있는 조건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John Locke의 전례를 따라, 어떤 사람들은 자전적 기억, 곧 개인의 과거에 관한 경험적 지식이야말로 시간 흐름에 따른 인격 지속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¹⁴⁾ 이는 자전적 기억의 상실이

14) Lock (1979)은 전통적으로 기억 기준으로 이해되어온 “의식의 동일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그러나 Strawson (2011)을 참조하라.

지속에 균열을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엄밀히 따지자면 새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전 사람은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⁵⁾ 따라서, 돌이킬 수 없는 기억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은 발병 전 그들의 몸을 차지하던 이전 사람들과 계수적으로 구분 가능하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치매의 영향으로 인격이 와해되는 비극은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또한 기억을 표준으로 삼는 접근 방식의 약점도 드러낸다. 이론을 제쳐두고서라도, 우리는 대개 치매를 겪고 있는 우리의 할머니를 어릴 적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던 할머니로 지속적으로 식별하며, 따라서 그를 마땅히 돌봐줄 필요성을 느낀다(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통시적 정체성과 관련된 모든 이론들은 불가피하게 특정 수준의 망각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기억들을 무디게 만들거나 지우는 개입들이 통시적 정체성을 의심하게까지 만들지 않을 것이다(물론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의 의견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일 상적으로 지칭되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정체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인격(personality)이다. 모두에게겐 과거가 있으며, 이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 만약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것이라면, 기억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과연 이렇게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이다. 실재론자(essentialist)는 자신의 정체성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조적으로, 실존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며, 따라서 스스로 끌리는 자아상에 비추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15) 정체성과 기억 간의 관계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선 Parfit (1984), DeGrazia (2005), Schechtman (2005), Galert and Hartmann (2007).

한다. 심지어 그것이 이전 인격적 특성들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말이다(Cf. Bublitz and Merkel 2009; Erler 2011). 이후에 형성될 인격들에 대항하여 이전 인격의 유지를 지지하는 주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설계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정체성을 “배신하는” 행위의 도덕적 그릇됨은 찾아볼 수 없다. 정체성은 개인의 현재 이해들에 근거해야 한다. 실존주의적 접근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을 포함하여 자신이 자신의 과거에 반응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할 수 있다. 더불어 개인적 성숙을 위하여 역사적 허위를 용인할 수도 있다. 과거의 일부분을 버린다는 것은 곧 인격을 버린다는 뜻은 아니며 그것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은 자기 개발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거나 과거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이 자기 개발을 억누를 시에만 설득력을 얻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경로 및 상태를 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자아창조(self-creation)를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3. 자아 성장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의 미래를 형성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심리학적 가설로서 받아들인다. 의심의 여지가 없게도, 스스로와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일은 인생의 주요 난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기억을 망각하거나 편집하는 것 또한 그러한 과정의 일부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서사적 정체성(narrative identity)에 관한 이론들은 인격 형성에 건설적인 과정들을 강조한다. 인간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스스로의 기억, 믿음, 자

아상, 타인들의 시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및 염원 등 다양한 출처들로 짜여진다(Cf. Galert and Hartmann 2007). 흥미로운 점은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인간은 과거를 진실되게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의 안녕(well-being)에 건설적인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는 미화되기도 폄하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의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 사회적 지위 등과 관련하여 - 현재에 만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Wilson and Ross 2001). 그러므로 망각, 선별적 기억, 감정적 반응 감소 등은 스스로에 대한 의미 있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건설하는 작업에 해가 되지 않는, 꽤 일상적인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들은 게다가 정기적으로 발생한다(Bell 2008). 따라서 자기 개발에 있어 과거의 진실성은 핵심 요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¹⁶⁾ 물론 이것이 기억 편집이 윤리적으로 권장될 만한 일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억의 편집이 자기 개발에 극복될 수 없는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자신의 과거를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은 그것의 반복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오래된 지혜를 뒷받침해주는 신경과학적 증거도 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기억적 결함을 겪고 있는 사람은 미래 계획을 세우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기억과 계획에 관여하는 뇌의 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기억의 (진화론적) 목적은 과거의 정확한 회상이 아니라 미래의 시뮬레이션이라고 추정한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16) 어떤 기억 장애들은 자아상을 형성시키는 것을 방해한다. 예로 Klein et al. (2004).

17) “일화 기억의 구조적인 특성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미래를 정신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하는 일화적 시스템의 역할에 기인한다.” Schacter and Addis (2007), p.779, Schacter et al. (2007).

하고, 인격 개발에 있어 개인의 과거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유용할 수 있다. 개인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곧 개인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불쾌한)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가능케 하고,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들이나 일상의 골칫거리들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과거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자아성장의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심지어 트라우마적인 사건들에 관해서도 사실일 수 있다. 되돌아보았을 때 그러한 사건들도 그 나름의 의미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발판 삼아 성장하기도 하며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도 한다(Calhoun and Tedeschi 2006). 기억을 무디게 하거나 지워버리는 것은 그러한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끔찍한 사건들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등 끔찍한 사건 자체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따라서 비극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정서적 혼란에 대처하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잠재적 긍정적 효과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사건들 그 자체가 미화되서는 안 된다. 기억 조작은 과거의 그림자를 극복해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트라우마의 잔재를 극복하느라 소모되고 있는 내면의 자원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치료 목적의 망각이 권장될 만한 이유가 충분하더라도, 기억 조작이 사소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쓰이는 데 남용됨으로 인격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해 보인다. 성급함, 장기적 해악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 등 인간이 가진 악명 높은 특성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특히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것은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린다 하더라도

도 남들이 그들의 기억을 유지하는 이상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¹⁸⁾ 본인이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타인들이 그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면, 이는 불편하고 기이한 상황들을 낳을 수도 있고, 원래의 기억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나쁠 수 있다. 또한 원치 않게 기억을 잃어가는 환자들의 사례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과거에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 그럴 경우 기억의 말소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결국, 과거가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은 잠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윤리적 이상들과 맞닿아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도 온전히 우선시될 순 없다. 알맞고 진실되게 기억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번영의 삶의 필수조건이 아니다. 번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표준적 조건들만 놓고 보면 자연적 기능들을 조작하는 일은 긍정적으로 비추어지며, 자연적 기능들조차 알맞고 진실되게 기억한다는 윤리적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 조작은 여러 위험들을 제기하며, 현명하지 못한 선택들을 낳을 수도 있기에 권장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잠재적 이익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조작되는 기억의 종류, 개입의 정확한 효과,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결과들로 판가를 날 사안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은 선형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조심스럽게 경험적으로 탐구되어야 한다.

18) 윤리적 측면들에 대한 더욱 심도 깊은 논의는 Levy (2007), Liao and Sandberg (2008).

IV. 기억과 법

법과 윤리학은 그 접근에 있어 상당히 다르다. 법은 무엇이 도덕적으로 권장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도덕적 조언과는 다르게, 법적 조항들은 모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중립적이고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 체계들은 좋은 삶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상반적인 관점들을 시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인생관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세부적 법적 조항들은 더 고차원적인 원칙들에 합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들은 주로 헌법과 인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규범들의 뼈대를 형성한다. 자유주의적 권리들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사상은 자기 이해가 결부된 상황에서 개인은 넓은 범위의 자율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성은 경솔하고 비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자유까지도 수반한다. 법적 자유는 그러므로 도덕적 선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법적 간섭주의(legal paternalism)에 관하여, 적어도 이론상에서는, 열띤 논쟁이 벌어져 왔다(예컨대, Feinberg 1986). 실질적으로는, 대다수의 법적 체계들이 심각한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경 간섭주의(hard paternalism)를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 법적 권리들은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 이전에 타인의 권리 혹은 적법한 공공 이해와 형량 해야 하는 선험적 권리들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법적 체계와 문화는 서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후자는 추상적 차원에 머물러야 하며 모든 사법권에 동일한 정도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기억을 변화시키는 약물 혹은 도구의 사용은 서로 다른 법 조항들에 의해 규제된다. 프로프라놀롤(propranolol)

이나 항치매약제(antidementia drug) 같은 의약품은 처방을 필요로 하는 지정용 약물이다. 뇌 자극 기기 같은 도구들은 서로 다른 규제들의 영향 아래 놓이며, 암기 훈련, 운동, 명상 혹은 수면 같은 행위들은 전혀 규제 받지 않는다. 특정 수단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법 조항들은 많은 경우 그 수단이 기억에 대하여 가지는 효과 때문보다도 다른 이유로 인하여 제정된다. 그러므로 기억에 관한 현재 규제들은 순전히 수단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적이지 못하며, 현재 지식에 비추어 재검토되어야 할 수도 있다.

총체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정신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는 법 조항들은 그 수가 적다. 적어도 이론상에서는, 양심의 자유, 생각의 자유 같은 중요한 인권들이 정신의 일정 부분을 정부의 통제로부터 보호한다.¹⁹⁾ 그러나 기억은 예외였다. 정부는 과거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에는 합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느 시민이든지 증인으로서 증언하도록 소환될 수 있으며, 이는 정확히 기억해야 할 의무를 수반한다.

두 종류의 권리를 주목할 만하다. 첫 번째는 유럽 인권 조약(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에 따라 인권으로 인정 받는 정신 건강의 권리이다.²⁰⁾ 해당 권리는 정부가 시민의 정신에 해를 가하려는 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주며, 타인이 정신에 해를 가하려고 할 때에도 시민을 보호해준다. 그러므로 정신 건강의 권리는 정신적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기억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한다. 이에 더불어, 정신 장애를 효과적이고(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한 접근을 억제하는 행위 또한 정신 건강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결

19) Art. 9 ECHR, Art. 1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0) Art. 8 ECHR, e.g., Bensaid v. UK, App.No: 44599/98, 6.5.2001.

과적으로, 법원이 한 사람의 과거로의 진실성과 같은 윤리적 생각의 촉진을, 예컨대 PTSD로 인한 장기간의 고통과 같이 정당화하기에 충분히 중대한 이해관계로 간주할 거 같지는 않다.

이에 더하여, 기억의 특정 측면들은 정체성 및 인격 같은 사안들과 밀접하며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²¹⁾ 예를 들어, 역행성健忘증이나 상당히 진전된 알츠하이머병이 낳는 인격적 퇴화 효과들은 존엄성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이다(이러한 병들은 존엄성 있는 삶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당연히 심각한 기억손실에 기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을 내포할 뿐 아니라, 기억장애 치료 등과 같은 수단으로 이러한 병들이 발병하는 것을 방지하는 책임도 정부에게 부여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리고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긍정적인 책임들의 범위는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1. 기억의 자유

존엄성 혹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기억 개입들은 현행 법 상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기억에 국한된 새로운 규제들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자와 이론가들에게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시작점으로서 Adam Kolber는 새로운 권리를 “기억의 자유”로 인정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는 기억의 자유를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우리의 기억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련의 권리들”이라고 설명하였다(Kolber 2006, p.1622; Kolber 2008)는데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바이다. 기억의 자유는

21) 비록 언제나 성문화되거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대개 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이해되어왔다.

자유라는 보편적 전제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 보호의 일환이기도 하며, 이는 인권법의 근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기억의 자유 권리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며, 미래에 연구로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 권리의 범위

가. 기억할 권리

기억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관심사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여, 전기적 사건들이 무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기억은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엄중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본적 차원에서 기억의 자유는 기억할 수 있는 권리를 수반한다.²²⁾ 기억의 자유는 사람이 그의 의지에 따라 기억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러한 자유권은 타인의 기억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에 부합한다. 전기 충격 요법, 약물 등 기억을 손상시키는 개입들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행될 경우 강력한 정당화의 근거가 필요하다.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특정 기억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거나 의미 있고 진실된 삶의 내러티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강력할 시, 기억할 권리가 더욱 강력해진다고 - 그러므로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들보다 더욱 중요해진다고 - 주장하는 바이다.

게다가 해당 권리는 왜곡적인 영향들로부터 진실된 기억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1990년대 법원은 억압된 기억들과 관련된 사건들에 직면하면서 이러한 사안을 다룬 바 있다. 특정 심리 이론들

22) 기억할 권리가 물론 기억할 의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에 따르면,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남긴 경험들에 관한 억압된 기억들은 실험적인 심리적 방법론들을 활용함으로써 회수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심리 치료들을 거쳤을 때 특정 환자들은 그들이 어릴 적 성적으로 학대 당한 것을 기억하고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이러한 기억들은 대다수 거짓으로 판명 났다. 그것들은 회수된 것 또한 아니었다. 그것들은 최면, 심상 유도(guided imagery), 약물, 학대의 내용이 담긴 기억의 내용을 긍정하는 해석 등의 암시적인 수단들로 심리치료사들에 의해 (부주의하게) 심겨진 기억들이었다(Cf. Loftus and Ketcham 1996; Brainerd and Reyna 2005, Ch. 7). 때때로 환자들은 사탄 숭배 의식에서 벌어진 학대 혹은 집단 강간 같은 기괴한 사건들을 기억해내기도 하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부 성폭력 용의자들이 자신들이 결코 하지 않은 끔찍한 사건들의 범인임을 고백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의 암시적 심문들이 거저된 기억을 심겨놓았기 때문이다.²³⁾ 신빙성과 과학적 합의의 부족으로, 법원들은 점점 억눌린 기억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회수된 기억들로부터 도출되는 증언들만으로 유죄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는, 그에 부합하는 추가적 증거가 없는 이상 드물다.

이러한 사례들은 환자들이나 누명을 쓴 사람들이 치료사들을 상대로 정당한 소송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던진다. 환자와 심리치료사 간의 관계는 계약법에 따라 다루어진다. 치료사들은 그 분야의 전문적 관행, 곧 의학적 기준들에 따라 치료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에서는 그런 기준들이 지켜지지

23) 한 유명한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한 공권력의 압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25명의 어린이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 Levy (2007).

않았다. 적어도 기억을 잠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은 육체에 대한 물리적 개입들처럼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가 필요하다. 환자들은 억눌린 기억에 관한 이론들의 과학적 신빙성과 거짓된 기억들의 위험에 관하여 미리 고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거짓된 기억들을 심는 행위는 그러므로 의료 과실 관련 소송 사유가 될 수 있다.

더불어, Loftus의 연구는 심리 치료와 결부되지 않은 상황들에서도 거짓된 기억이 심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을 다루려면 법적으로 타인에 기억에 관하여 비계약적인 돌봄 책임이 설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거짓된 정보만으로도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보는 사실상 어디에나 있으며, 그것 자체만으로는 배상 소송 관련 사유가 되기 힘들다(Morgan et al, 2013). 법은 심문을 담당하는 경찰관과 같이 특별한 의무가 부여된 사람들로 책임을 좀 더 한정시켜야 한다. 어릴 적 백화점에서 미아가 되어본 경험 등 실험에서 사용되는 인위적 기억과는 다르게 악의적 목적으로 심겨진 기억이라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심리정신적 고통의 유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법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²⁴⁾

■ 삭제로부터의 보호

이에 더하여, 법은 원치 않은 기억 삭제에 관하여서도 보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지 않더라도 말

24)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제3자(피고인)가 치료인을 고소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볼 수 있다. 획기적인 사건인 *Ramona v. Isabella* 사건에서, 법원은 잘못 기소된 아버지를 위한 구제책을 승인했다; Mullins (1996).

이다. Walter Glannon은 이와 관련하여 실제 있던 사건을 살짝 각색하여 논의한 바 있다.²⁵⁾ 의심스러운 조직의 제거를 위해 환자는 국소적 마취에 동의하였다. 필요한 경우 의사가 진정제를 투여하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수술 과정에서 국소적으로 마취된 환자는 병리학자들이 “심각한 암”을 진단하는 것을 엿듣게 되고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의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프로포폴(propofol)을 그에게 투여한다. 이는 때때로 “망각의 우유(milk of amnesia)”라고도 불리는 약물인데, 초기 기억 응고화를 방지함으로써 선행성 기억상실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깨어난 후,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이 잘 진행됐다고 알려준다. 그리고 며칠 후 심각한 진단 결과를 통보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기억 삭제의 사례이긴 하지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대신 개입은 일시적으로 그것을 완화시킨다. 이와 비슷하게, 가해자들은 그들이 식별되지 않도록 피해자들의 기억을 삭제할 수 있으나 이는 PTSD를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개입들은 현재로서 인정되는 불법행위들의 범주에 들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불법 행위 관련 법은 확대 적용되어 그 결과의 긍정성 혹은 부정성에 관계 없이 원치 않은 기억 삭제를 위법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중요성 때문에 기억들을 동의 없이 삭제해버리는 행위는 입법자들에 의해 형사 범죄로 상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Bublitz and Merkel 2014). 물론 예외적인 경우들에서 기억의 삭제는 정당화될 수도 있다(Glannon이 논의한 경우가 그러하다).

25) Glannon (2010), 240f. 사건의 출처는 TIME, Oct. 15th 2007.

나. 기억을 증진시킬 권리

1950년대에 Wilder Penfield는 뇌에 대한 실험적 자극의 선구자가 되었다. 측두엽을 대상으로 한 전기적 자극이 오래 전 잊혀진 사건들에 대한 생생한 기억들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적어도 실험 대상자들은 그렇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기억들은 사실로 입증된 적이 결코 없기에 그저 환상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Schacter 1995, p.12). 그러나 더욱 정밀한 자극 및 기억 흔적들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통찰들은 숨겨진 기억들을 탐구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논거를 위하여 사실에 충분히 부합하는 기억들에 한해서 그렇게 가정할 것이다. 사람이 그러한 절차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치매 치료약물의 비(非)치료성 사용, 기억 훈련같이 기억을 잠재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은 구조적으로 비슷한 질문들을 던진다. 기억의 오류에 대한 보편적 불만과 과거에 관하여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는 호기심을 고려해보았을 때 효과적인 기억 증진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삶의 사건들이 희미해져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기억 증진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는 기억할 권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기억할 수 있는 인간의 자연적 능력의 한계에 속박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억할 수 있음을 보증하며, 이는 기억 증진 도구의 사용의 허용을 암시한다. 그러한 도구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기억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한계

이러한 개입들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인지 향상의 한 형태로서 기억 증진 목적의 도구들은 많은 윤리적 반대들에 직면한다. 안정성,

효능, 지나치게 정밀한 기억이 낳을 수 있는 문제적 결과 등의 사안들 외에도, 윤리적·사회적 이해들은 기억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의 자연적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 때문에 때로는 기억 증진 도구들이 우리의 과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수가 있다 -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이해들이 높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가령 개인의 삶에 있던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하려는 이해를 넘어서는 만큼 강력한 사회적 이해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연상기호 훈련 등 고전적 기억술(*ars memoriae*)의 현대적 실행들에 관한 규제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비록 그러한 실행들이 직업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약물에 대한 접근은 부작용을 고려해보았을 때 제한될 수는 있다. 그러나 개인 또는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지 않는 이상, 의사들은 약물을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억향상 기술이 미래에 있을 기억 감퇴를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를 갖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해당 기술을 사용할 자유는 더욱 강력해진다.

보기 드문 경우들에서, 기억의 자유는 특정 사건들이 잊혀지기를 바라는 타인의 타당한 이해에 의해서 제한 받게 될 수도 있다(Kolber 2006). 피해자에게 치욕을 심어주고 그를 학대한 생생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가해자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피해자는 그러한 기억들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해할 수 있는 바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억들은 가해자에게 중요할 수 있다(그가 스스로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납득하게 된다는 측면 등에서). 만약 기억을 지우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경우, 법은 이렇게 충돌하는 이해들 가운데서 균형을 맞

추여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들을 제외하면, 기억할 권리는 대체로 망각과 결부된 사회적 이해보다 우위에 있다.

다. 잊을 권리²⁶⁾

기억은 회상과 망각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기억의 자유는 기억하지 않을 자유뿐 아니라 망각할 자유까지 포괄한다. 물론 타당한 윤리적 이유들로 인하여 의도적 망각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 자유는 도덕적으로 권장할 만한 영역에 일치하지 않는다. 온정주의적 근거에 따라 심각한 자해 행위만이 금지될 수 있는 것이다.

(1) 상기시키지 않기

잊을 권리는 타인이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기억하기를 강요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중한 순간을 (그리고 서로를) 잊지 말자는 연인들의 낭만적인 약속은 구속적이고 강제력 있는 법적 계약으로 이해될 수 없다. 이에 더불어, 잊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특정 인물 혹은 사건들에 관한 기억을 억누르려 한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경우 수포로 돌아간다. 외부적 시청각 혹은 후각적 자극들이 우리의 의도에 관계 없이 기억들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잊을 권리는 상기되는 것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 타인의 자유가 제한 받기 때문이다. 예컨대, 타인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상기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사

26) 역자주: 본고에서 right to forget은 '망각할 권리', '잊을 수 있는 권리'로 번역해도 의미가 통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right to oblivion, right to delete로도 사용됨)로 번역·통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right to forget은 기억하지 않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서 '잊을 권리'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안들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기억을 불러 일으키는 특정 수단들만이 기억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뇌에 대한 전기적 자극이 그 예시다. 말하는 것과 달리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의 뇌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한 개입들이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롭다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 기억들을 끌어내는 것 그 자체가 기억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다. 말과 뇌의 자극 사이에서는 다른 사람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관련된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관련 자극적 신호들을 두는 행위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기억의 상기가 공공에서 자극적 신호를 금지시키는 것을 충분히 정당화시킬 수 있다면, 온갖 종류의 자극들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민감성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적 영역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불쾌할 수 있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들에선 다른 결론이 정당화될 수는 있다. 일례로, 의도적으로 사회적 환경에서 피해자들에게서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기억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특정 상징들을 놓는 낙서 예술가들이 존재한다(실제로 있는 경우들이다). 이런 경우들에서는 사적인 목적으로 공공 물건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송과 관련하여 PTSD 및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기억들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법은 그러한 것들에 기반한 소송들에 더욱 관대해지고 있다. 물론 그 범위와 한계는 세부적 측면에서 논의 단계에 있다(Shen 2012).

(2) 의도적 망각

비록 기억의 자유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으로부터의 보호

를 제공하지는 못하나, 잊을 권리는 직접적 수단을 통하여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Umberto Eco는 한때 고전적 기억술과 고전적 망각술(*ars oblivionalis*) 간에 존재하는 불균형을 지적한 바 있다(Eco 1998). 우리는 기억을 위한 연상 및 신호 들을 만들어나기도 하나, 망각을 위한 고전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치 않는 기억을 억누르기 위한 간접적 전략들이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Anderson and Green 2001), 망각은 대체로 우리의 의식적 통제 하에 놓여 있지 않다. 응고화 방지 약물의 개발은 이러한 상황을 바꾸어놓을 수 있으며, 그것의 사용은 기억의 자유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런 류의 자유는 그에 대항하는 이해들에 의하여 억제될 수 있다.

(3) 온정주의에 따른 제한들: 자전적 기억의 삭제

정당화될 수 있는 온정주의의 한 예시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자전적 기억의 완전한 삭제의 경우이다. 심각한 기억 감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롱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자전적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기를 원할 수도 있다. 현재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뇌 관련 병변(病變)의 비극적 사례들은 이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억을 삭제시킬 수 있는 개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대다수의 경우에서, 그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결술한 결정일 것이며,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모든 사안들을 검토해보았을 때 이런 류의 극단적 기억의 변형이 타당한 바램인 경우들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개인이 미래에 누릴 수 있는 삶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본인이 선택하진 않았지만 비극

적 상황들이 발생하는 상황의 경우이다. 어떤 사람들에게겐 자전적 기억의 삭제는 통시적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하므로, 그것이 일종의 자살로 비추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²⁷⁾ 자살을 용인하거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들에선 자살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그러한 개입들에 관한 규제 및 절차를 논의할 수도 있다. 비록 얼핏 보기에 기이한 행위들이긴 하지만 말이다.

라. 한계: 집단 기억에 관하여

기억의 조작이 제공하는 일시적 안정이라는 유혹은 자아 개발에 부정적인 장기적 효과라는 대가를 치를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온정주의적 제재는 정당해 보인다. 우리는 이 지면에서 이런 논쟁적인 사안을 더욱 깊이 다룰 순 없다. 따라서 이제 공공 선이 결부된 이해들에 기반한 제재들을 사안으로서 다룰 것이다. 논쟁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기억 조작이 집단 기억에 대하여 가지는 효과들이다. 위원회는 “우리의 기억은 단지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 구조의 일환이다”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기억 약화의 사회적 파장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만약 우리가 홀로코스트(Holocaust)를 기억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그저 단지 비통이 사라지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란 말인가”(p.23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정하기도 한다. “우리는 대다수의 이득을 위하여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 끔찍한 기억을 견디어내길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27) 법은 아마 개인이 한 개체로서 가지는 정체성과 관련된 변화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자전적 기억의 삭제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서 개인을 간주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재정적 의무 등도 그 개인에게 계속 부여될 것이다. 삭제 이전의 범죄로 인하여 개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는 더욱 복잡한 문제이며, 예시로 Dufner (2013)를 들 수 있다.

안 된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결론 내리는 대신, 위원회는 사회가 피해자들의 고통에 온정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잔학 행위와 끔찍한 범죄들이 단순히 잊혀지며 피해자들이 불의를 시정하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려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도덕적 밑천이 드러났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트라우마를 입은) 생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있었더라면 망각하기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가정은 어긋나 보인다. 이에 대조적으로, 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도덕적 의무라고 여긴 것에서부터 살아남을 힘을 얻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곧 잔혹하게 살해된 사람들의 이름과 기억을 기리면서 일어난 일을 세상에 알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홀로코스트 박물관(Holocaust Museum)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 - “망자와 산 자를 위하여 우리는 증언해야만 한다”. 이것은 외부에서 부과된 의무라기보다는 실존적 현신의 표현으로 보인다. 부첸왈드 선언(Oath of Buchenwald)에서 생존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우리를 살아남게 한 것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복수를 위한 시간이 올 것이다”. 그들은 맹세한다. “우리는 범죄자들이 마지막 한 명까지 사람들 앞에서 심판 받을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²⁸⁾ 많은 사람들에게 망각은 결코 선택지가 아니었다.²⁹⁾ 그러나 이 글에서 생존자들의 개인적 동기들을 추정하는 것을 여기서 멈출 것이다. 왜냐하면 기억 조작과 관련된 전반

28) Oath of Buchenwald, April 19, 1945.

29)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기억에 관한 의무와 망각의 필요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는 핵심적인 의제이다; Ellie Wiesel의 글들을 참조할 수 있는데, 예컨대 그의 1986년 12월 11일 노벨수상 소감이 있다(www.nobelprize.org).

적 논의들을 참상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비극 각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질문은 현재의 논의를 뛰어넘은 영역이며, 그러한 사건들은 쉽게 일반화시킬 수도 없다. 추정하기로는, 홀로코스트를 조금도 잊지 않을 의무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보다 규모가 작은 사례들에서 기억 조작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 논의를 전개해나갈 것이다.

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기억은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며,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단 기억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망각 혹은 무더짐은 기억함이라는 집단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논쟁적이며 형이상학적으로만 유용해 보이는 집단 기억의 개념은 논점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³⁰⁾ 개인의 기억들은 집단이 그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엮어낼 수 있는 원천들이다. 이러한 사회적 내러티브는 흥미롭게도 개인의 기억과 유사하다. 역사적 진실성보다도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등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역사는 부분적으로 윤색되기도 하며, 어떤 부분들은 삭제되기도 한다. 현재의 이해에 밀접한 문화적이며 기념적인 행사들로 인하여 이야기들은 전승되며 윤색된다. 따라서 역사가들은 집단 차원에서도 발생하는 기억의 왜곡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Schudson 1995).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개인들의 기억들이 집단 기억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그것들이 “공동체의 기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기억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들에 접근하거나 그것들을 보존해야 한

30) Ricoeur's (2004), p.120에서 집단 기억이라는 단어를 만든 Halbwachs의 사상에 관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다는 공동체의 주장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류의 주장들은 개인들이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집단적 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이것은 도덕적 의무일 순 있어도 법적 의무가 될 순 없다.

기억에 대한 의무에 관하여 우리는 “기억하기”라는 개념의 모호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역사적 사건들을 집단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개인들이 그들의 과거를 다시 경험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전자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 그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헌사를 바치는 것, 망자를 기념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에 대조적으로, 집단 기억에선 집단 혹은 개인이 자의식적인 1인칭 시점의 기억을 경험하진 않는다. 집단적 의무는 자전적 기억과 구분되는 것이며 그것이 없어도 행해질 수 있다.³¹⁾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의 증인들이 모두 죽더라도 역사적 사건들에 관한 집단적 기억들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들의 기억들이 지워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집단적 기억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양심적 증인들의 구술적 증언이 집단 기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들은 증언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도 동의하듯이 만약 증인들이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고통을 감내하며 기억하기를 강요 받을 수 없다면, 그들은 증언하기를 독려 받더라도 궁극적으로 이것은 그들이 선택할 문제이다.

마. 사회적 이해: 증인의 증언

이와 관련하여 법은 더욱 엄격하다. 고통에 관계 없이 이는 공익

31) “괴로움을 없애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통에 대한 공감적 반응에 따라서, 희생자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지속되는 것인가. 아니면 관련 없는 사람들의 괴로움이 되는 것인가.

증진을 위하여,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법 집행 목적으로, 증인들에게 기억할 의무를 부과한다.³²⁾ 많은 사법권에서는 소환된 증인이 정확한 증언을 제시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법은 증인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획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증언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기억 조작은 증언의 정확성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진실을 식별하고 정의를 집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증언이 판사나 배심원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들에 의해 검증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구술 절차를 필수적으로 만든다. 구술 절차는 불가피하게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지므로, 그 시간 동안 법에 따라 증인들의 의무 및 그들의 기억의 법적 지위가 논의되어야 한다.

비록 원론적으로는 증언할 의무의 정당성이 분명히 부정될 순 없으나 - 누구나 그의 몫에 따라 (정의로운)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 그 정확한 경계는 그보다 더 불분명하다. 법정에서 증인들은 최대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진실되게 증언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억이 지워졌다면 증인들은 그들의 기억의 공백을 근거로 진실되게 증언할 수 없다. 우리는 사람들이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그들의 기억에 공백이 발생하는 그런 악명 높은 사례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그리고 어떤 증인들은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은 한다). 기억 공백이 있는 것이 때로는 증인에게 유리할 수 있기에, 고의적으로 기억 공백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유혹이 들 수 있으며,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그에 대한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미 오늘날, 목격자들은 알콜 또는 왜곡적

32) 성과 관련된 사건 같은 특별한 사건들에서, 절차 관련 규정들은 기억이 낳을 수 있는 고통을 인정한다.

영향들로 인한 반복적 학습 등의 수단들로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억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증언이 법적 목적에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적어도 의도적인 기억의 왜곡은 진실되게 증언할 의무에 대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증인이 스스로 일으킨 망각은 정의의 실현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법적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기에, 정확한 증언을 방해하는 기억조작은 금지되어야 한다. 현재 법 조항들은 스스로 발생시킨 망각을 다루진 않는다. 따라서 증거의 파괴 혹은 왜곡 같은 위법 행위들은 확대 적용되어 뇌 속의 기억 흔적들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³³⁾ 그러나 기억 흔적들에 개입하는 것은 많은 측면에서 물리적 사물들에 개입하는 것과 다르다. 후자는 압수하여 보관할 수 있는 반면, 기억은 그 역동적인 특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사람에게 수정되지 않은 기억을 (혹은 첫 인상을) 보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기억이 회상되며 재구성화되는 이상 일부 변형들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법은 현재까지의 연구를 고려하여 증인이 본인의 취약한 기억을 신경 써야 할 의무의 범위를 재고해보아야 한다.

기억을 무디게 하는 작업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경험적 관점에서, 감정을 무디게 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을 얼마나 왜곡시키는지 연구되어야 한다. 만약 감정적 반응이 무너지는 것이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기억에 관한 주된 법적 이해는 - 과거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 - 방해받지 않는다.³⁴⁾ 이에 대조적으로 만약 무디게 하는 작업이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을

33) Kolber (2006), p.1589에서 나오는 이러한 목적의 미국을 염두에 두고 펼쳐지는 논증을 참고.

34) 특정 경우, 법은 변경되지 않은 기억에 더욱 깊은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 (피해를 가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Kolber (2006), p.1592를 참고하라.

저해시킨다면, 정확한 기억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증인의 권리 사이에서 사려 깊은 균형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대체로 피해자나 목격자와 같이 사건에 책임이 없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 극심하고 정신적 쇠약을 야기하는 트라우마를 겪을 것을 강요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응고화 과정에서 행해질 수 있는 개입의 시간대가 짧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두 시간), 논의되어야 할 많은 현실적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한다(Cf. Kolber 2006, p.1587).³⁵⁾ 결론적으로, 증인들이 증언한 후에는, 법은 그들의 기억에 대하여 그 어떠한 권한도 갖지 않는다.

V. 책임에 미치는 영향

또 다른 반대 근거는 기억의 변화가 도덕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정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용서하는 것 대신에, 그들은 단순히 망각하게 될 것이다.³⁶⁾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우려는 억지스럽고, 문제에 관한 이해관계를 뒤집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주요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피

35) 아마도 적어도 최초 변경되지 않은 증언을 기록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테이프에 녹음되는 심문 방식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증인에게 반대신문을 행할 수 없기에 일부 당사자들에게 상황이 불리할 수 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난 직후 누가 정신적 외상을 입을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행동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이해들에 균형을 맞추어야 할지가 불분명하다. 게다가, 기억들이 법적 중요성이 있을지는 종종 분명하지 않다;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가?

36) Ricoeur (2004)는 망각을 통해 용서가 촉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를 보상하기 위함이다. 피해자의 주된 요구는 현상유지를 복원하는 것, 즉 피해행위가 일어난 적이 없는 것처럼 그의 입장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역사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요구는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대신 2차적 (재정적) 보상책이 주어진다.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정신적 결과를 완화하는 것이 완전한 회복에 가장 가까운 근사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의 변형을 통해 필요하다면 심리적 해악을 완화하는 것은 정의의 이행일 뿐 그것의 포기가 아니다.³⁷⁾

대개 두 개의 강력한 이미지를 통해 기억을 무디게 하는 것이 책임감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 묘사되곤 한다. 하나는 억눌린 감정들에 사로잡힌 병사로, 그는 그가 참여하는 끔찍한 행위에 둔감하며, 이는 그가 영혼이 없는 살인기계가 됐다는 반증이다. 다른 하나의 이미지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나오는 대사이다.

“그를 치료하렴. 병든 마음을 치료할 순 없는 것인가? 그가 가지고 있는 슬픔의 기억을 앗아갈 순 없는 것인가? 약을 사용하여 그의 머리 속에 있는 괴로운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그의 마음에 안식을 줄 순 없는 것인가?”³⁸⁾

37) 더불어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도덕적 차원에서 특정 요구들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이 행한 행동들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 기억의 삭제는 대개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이러한 의무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유죄를 털어놓지 않는 특권을 누릴 수 있으며 침묵할 수 있기 때문이다.

38) Shakespeare, *Macbeth*, Act V, Scene 3.

Ⅵ. 기억과 양심

사람들이 기억과 함께 죄책감을 지워버린다는 발상, 혹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양심을 가진 살인자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따라서, 맥베스가 그의 아내에 대하여 간구했던 것처럼, 범죄의 가해자들은 기억을 무디게 하는 약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무감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Parens 2010).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경우들에서 기억은 단지 수단일 뿐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때때로 죄책감을 느낄 의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도덕적 직관은 마음의 양심이 죄의식을 심어준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연 법적 의무라 할 수 있을까? 이 흥미로운 질문은 또 다른 확고하게 확립된 인권과 관련이 있는데 바로 양심의 자유이다. 양심의 자유는 모든 인권 조약과 인권 체계의 핵심이 되는 원칙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사법부와 법학계는 인간의 내면 곧 양심에 관한 믿음과 감정이 형성되는 영역은 무조건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개입은 철저히 금지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생각은 곧 개인의 양심이 원칙적으로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권리와 그 한계의 정확한 윤곽은 아직 정의되지 않았지만,³⁹⁾ 양심의 자유는 국가가 개인의 양심에 대해 어떠한 법적 청구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더불어 약물에 대한 규제는 양심에 미칠 부정적 효과들에 기반 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양심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 자유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9) 관련하여 Hammer (2001)의 분석이 가장 탁월하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절대적 위치 이면에 있는 사상적 뿌리는 깊이 간직하고 있는 도덕적 신념에 대한 박해 및 개인의 믿음을 부정하게 만들려는 압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해당 권리의 근원은 중세시대에 있던 종교적 전쟁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역사적 시발점 혹은 법률적 연구 어느 쪽에서든 양심이 내는 ‘내면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묵살할 가능성은 철저히 검토되어오지 않았다. 이는 과연 자유주의 국가가 시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소한의 심리학적 특성들을 소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심도 있는 질문을 제기한다. 잠재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가 되어야 할 법적 의무가 시민들에게 부과될 수 있을까? 그것이 양심을 무디게 하는 약물을 금지시키거나 당사자 의사에 관계 없이 특정 도덕적 기질들을 강화 시킴으로써 법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억의 자유보다도 더 복잡한 영역에 있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현재의 해석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할 법적 의무에 반대된다.

■ 가해자의 기억

그 결과, 군인들은 법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의무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양심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여도 그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 그러나 군사 행동 강령이 기억을 손상시키는 물질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억을 무디게 하는 기술이 PTSD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다수 경감시키는 전망을 실현시키는 것이 확실히 되면 군대는 주로 그것을 권장하게 된다. 우리는 군인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살생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 공감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인간으로 산다는 의미

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군인이 다른 사람이 그에게 명령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간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위선적이라고 사료된다.⁴⁰⁾

양심의 절대적인 보호에 대한 예외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사례는 과실범에 관한 것이다. 통찰력 있는 분석에서 Carter Snead는 범죄자와 사회가 적합하고 진실되게 기억한다는 것을 형사처벌의 다양한 목적들이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억 조작은 이러한 목적들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Snead 2011). 이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은 형사 처벌 제도의 목적에 기여할 필요가 없다. 이 점은 교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 교화 프로그램은 주된 형벌적 목적들 가운데 하나와 맞닿아 있는데, 석방 즈음 범죄자이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범죄 유발 심리적 요인들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범법자들은 교화 프로그램을 참여함에 있어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그들이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국가가 이에 대한 인센티브와 보상을 제공할 수는 있다(예: 감형 및 가석방의 조건으로 치료). 그러나 범죄자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정신 교화를 거절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⁴¹⁾ 강압적 교화 프로그램에 대해 호의를 보이는지 여부는 처벌의 합법적 근거에 대한 각 개인의 입장

40) Kolber (2006), p.1621에서 육체적 상처와 정신적 상처 간의 비유가 나온다. 만약 전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무런 염려가 없는 일이라면, 후자를 치료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이는 군인은 정신적 고통을 받아도 무방하다는 내밀한 직관 때문일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 원칙으로서 설득력을 잃어버린다.

41) 일부 국가는 마약 복용자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적 재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에 달려 있다. 만약 교화 프로그램을 위해 새로운 수단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 존경스런 문제는 다시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국가는 처벌의 일환으로 죄책감, 후회, 수치심과 같은 교화를 유도하는 감정들을 가라앉히는 물질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죄자들이 정신 건강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서둘러 상기시킨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되는 고통스러운 정신적 결과에 대한 치료를 포함해서 말이다. 따라서 스스로 자초한 정신적 혼란과 병적인 외상 사이에 경계선이 그려져야 할지도 모른다. 범법자가 자신의 행위의 문제점을 납득하고 수용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 태도여야 하겠지만, 심각한 PTSD 증상의 경우, 그 고통 가운데서 범죄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권리는 사회적 관심사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럴 경우 그들은 치료 목적의 기억 조작을 받을 권리가 있어 보인다.

VII. 증진시킬 의무

마지막으로, Vedder와 Klaming은 공익이 결부된 상황에선 기억향상 기술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기억향상 기술은 증인들의 기억을 증진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Vedder and Klaming 2010). 그들의 견해로는, 정확한 증언을 얻기 위한 대중의 이해가 증인이 가진 기억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능가할 수도 있다. 비록 현재 신뢰할 만한 기술이 부족하기에 그러한 주장이 실현되기에는 시기상조지만, 국가가 기억을 증진시킬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억의 자유는 자발

적인 증진에 반대하지 않지만 의무적인 증진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전에 주장했듯이 (사소하지 않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증인은 의무를 질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작용이 없어 보이는 증진 수단들, 곧 규칙적 수면(Thorley 2013) 혹은 기억의 반복적 상기(Chan and Lapaglia 2011; Pansky and Nemets 2012) 같은 수단들에 대해서도 법적 의무는 증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각 사법권의 특징들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사법권에서는 증인이 예컨대, 기록을 참고하는 등으로 본인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킬 의무조차 없다. 한편, 어떤 사법권에서는 증장을 포함하여 기억을 조작시키는 도구들을 명시적으로 금지시킨다.⁴²⁾ 만약 입법자들이 현행 조항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부작용 이상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Vender와 Klaming의 제안은 기억의 정치학에 대하여 광범위한 고민을 촉발시키기에 흥미롭다.

VIII. 결론 및 방향

역사의 대부분 동안 인류의 과거에 대한 지식은 개인 및 집단 기억을 바탕으로 한 구전된 설명에 의존해왔다. 기억은 문화의 발전에 있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되어왔다. 이는 많은 주요 종교들의 저술들에서 기억해야 할 의무가 다루어진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Margalit 2002). 망각도 마찬가지로 정치 권력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왔다. 성경에서도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한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려야 한다는 명령이 나온다. 로마에서는 사람에 대한 기억과 결부

42) § 136a Germ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된 심판으로서 일종의 기록말살형(damnatio memoriae)이 존재했다. 이 예시들은 집단 기억 조작의 악명 높은 전례들로, 근대에서는 스탈린 정부가 역사적 사진들을 왜곡한 사건도 있었다. Ricoeur는 Henri IV가 공포한 낭트 칙령(Edicts of Nantes)을 언급한 바 있다. 해당 칙령은 이전에 벌어졌던 전쟁들과 관련하여 그 첫 번째 조항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에 관한 기억은 마치 발생하지 않은 일들같이 소멸되고 더는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한다(Ricoeur 2004, p.454). 그 시절에는 평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망각이 규율화되었다. 현대에는 이에 반대되는 경향들이 발견되는데, 예컨대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에서 사실에 관하여 증언한 사람들에게는 사면이 허락된다. 이 두 예시 모두 기억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역을 보여준다.

공공의 이해를 위하여 기억 증진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회의적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이 실현되면 처음으로 기억에 관한 정부의 권한이 외부적 기록을 넘어서 인간의 마음과 뇌로 확대될 것이다. 정부가 그 명분에 맞는 기억들만을 향상시키려 할 시에는 어떻게 하는가 - 부분적으로만 강화된 기억으로 인하여 과거가 변경되진 않을까? 만약 다른 기억들은 억압되거나 지워진다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권력의 남용 가능성은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가?

각 개인의 기억은 근본적으로 타인에 의하여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정부의 직접적인 접근으로부터 보호되어왔다. 신경과학은 이러한 자연적 한계들이 극복되는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도 있으며, 이는 사회가 개인의 기억과 역사를 다루는 방식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한 함의들을 갖는다. 윤리학자들뿐만 아니라 대중 및 민주사회기관들도 이러한 함의들에 관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억의 정치학의 프레임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때로는 한 개인의 기억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놓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억의 자유는 중요하며 기본적 권리로서 수용되어야 한다. George Orwell이 주장했듯이 만약 정부가 우리가 과거를 인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미래를 바꾸는 수단 또한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Alberini, C. M., Milekic, M. H., & Tronel, S. (2006). Mechanisms of memory stabilization and de-stabilization. *Cellular and Molecular Life Sciences*, 63, 999-1008.
- Anderson, M. C., & Green, C. (2001). Suppressing unwanted memories by executive control. *Nature*, 410, 366-369.
- Bell, J. (2008). Propranolol,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narrative identity. *Journal of Medical Ethics*, 34, e23.
- Beracochea, D. (2006). Anterograde and retrograde effects of benzodiazepines on memory. *Scientific World Journal*, 6, 1460-1465.
- Bernecker, S. (2010). *Memory: A philosophical stud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lustein, J. (2008). *The moral demands of memory*.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rges, J. L., Yates, D. A., & Irby, J. E. (2007). *Labyrinths: Selected stories & other writings*. New York: New Directions.
- Brainerd, C. J., & Reyna, V. F. (2005). *The science of false memory* (Oxford psychology series, Vol. 3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ublitz, J. C., & Merkel, R. (2009). Autonomy and authenticity of enhanced personality traits. *Bioethics*, 23(6), 360-374.
- Bublitz, J. C., & Merkel, R. (2014). Crimes against minds: On mental manipulations, harms and a human right to mental self-determination. *Criminal Law and Philosophy*, 8(1), 51-77.
- Cahill, L., Prins, B., Weber, M., & McGaugh, J. L. (1994). Beta-adrenergic activation and memory for emotional events. *Nature*, 371(6499), 702-704.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6).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han, J. C., & Lapaglia, J. A. (2011). The dark side of testing memory: Repeated retrieval can enhance eyewitness suggesti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17, 418-432.
- Coffman, B. A., Clark, V. P., & Parasuraman, R. (2014). Battery powered thought: Enhancement of attention, learning, and memory in healthy adults using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Neuroimage*, 85, Part 3, 895-908.
- Conway, M. (2005). Memory and the self.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53, 594-628.
- Corkin, S. (2002). What's new with the amnesic patient H.M.? *Nature Reviews. Neuroscience*, 3, 153-160.
- DeGrazia, D. (2005). *Human identity and bio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novan, E. (2010). Propranolol use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military veterans: Forgetting therapy revisited.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53(1), 61-74.
- Dresler, M., Sandberg, A., Ohla, K., Bublit, C., Trenado, C., Mroczko-Wasowicz, A., Kühn, S., & Repantis, D. (2012). Non-pharmacological cognitive enhancement. *Neuropharmacology*, 64, 529-543.
- Dudai, Y. (1996). Consolidation: Fragility on the road to the engram. *Neuron*, 17, 367-370.
- Dudai, Y. (2012). The restless engram: Consolidations never end. *Annual Review of Neuroscience*, 35(1), 227-247.
- Dufner, A. (2013). Should the late stage demented be punished for past crimes? *Criminal Law and Philosophy*, 7(1), 137-150.
- Eco, U. (1998). An ars oblivionalis? Forget it. *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103, 254-261.
- Erdelyi, M. H. (2006). The unified theory of repress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9, 499-551.

- Erlar, A. (2011). Does memory modification threaten our authenticity? *Neuroethics*, 4(3), 235-249.
- Feinberg, J. (1986).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alert, T., & Hartmann, D. (2007). Person, personal identity, and personality. In R. Merkel et al. (Eds.), *Intervening in the brain. Changing psyche and society*. Berlin/New York: Springer.
- Genzel, L., Kroes, M. C., Dresler, M., & Battaglia, F. P. (2014). Light sleep versus slow wave sleep in memory consolidation: a question of global versus local processes? *Trends in Neurosciences*, 37, 10-19.
- Geraerts, E., & McNally, R. J. (2008). Forgetting unwanted memories: Directed forgetting and thought suppression methods. *Acta Psychologica*, 127, 614-622.
- Glannon, W. (2006). Psychopharmacology and memory. *Journal of Medical Ethics*, 32(2), 74-78.
- Glannon, W. (2010). The neuroethics of memory. In S. Nalbantian et al. (Eds.), *The memory process, neuroscientific and humanistic perspectives* (pp. 233-251). Cambridge, MA: MIT Press.
- Hammer, L. M. (2001).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Some suggestions for it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Aldershot/Burlington: Ashgate/Dartmouth.
- Harris, C., Sutton, J., & Barnier, A. (2010). Autobiographical forgetting, social forgetting, and situated forgetting: Forgetting in context. In S. Della Sergio (Ed.), *Forgetting* (pp. 253-284). New York: Psychology Press.
- Henry, M., Fishman, J. R., & Yougner, S. J. (2007). Propranolol and the prevention of PTSD: Is it wrong to erase the “sting” of bad memories?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7, 12-20.
- Holmes, E. A., Sandberg, A., & Iyadurai, L. (2010). Erasing trauma memorie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7, 414.

- Hötting, K., & Röder, B. (2013). Beneficial effects of physical exercise on neuroplasticity and cognition.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37(9), 2243-2257.
- Hübener, M., & Bonhoeffer, T. (2010). Searching for engrams. *Neuron*, 67(3), 363-371.
- Husain, M., & Mehta, M. A. (2011). Cognitive enhancement by drugs in health and diseas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5, 28-36.
- James, W. (2007).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Cosimo Classics.
- Joëls, M., Fernandez, G., & Roozendaal, B. (2011). Stress and emotional memory: A matter of timing.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5, 280-288.
- Kandel, E. (2007). *In search of memory: The emergence of a new science of mind*. New York: Norton.
- Karpicke, J. D., & Roediger, H. L., 3rd. (2008). The critical importance of retrieval for learning. *Science*, 319(5865), 966-968.
- Kindt, M., Soeter, M., & Vervliet, B. (2009). Beyond extinction: Erasing human fear responses and preventing the return of fear. *Nature Neuroscience*, 12, 256-258.
- Klein, S., German, T., Cosmides, L., & Gabriel, R. (2004). A theory of autobiographical memory: Necessary components and disorders resulting from their loss. *Social Cognition*, 22(5), 460-490.
- Kolber, A. (2006). Therapeutic forgetting: Legal and ethical implications of memory dampening. *Vanderbilt Law Review*, 59, 1561.
- Kolber, A. (2008). Freedom of memory today. *Neuroethics*, 1(2), 145-148.
- Kroes, M. C., Tendolkar, I., van Wingen, G. A., van Waarde, J. A., Strange, B. A., & Fernández, G. (2014). An electroconvulsive therapy procedure impairs reconsolidation of episodic memories in humans. *Nature Neuroscience*, 17, 204-20.
- LeDoux, J. (2007). Consolidation: Challenging the traditional view. In H. L. Roediger, III, Y. Dudai, & S. M. Fitzpatrick (Eds.), *Science of memory*:

- Concepts* (pp. 171-17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vy, N. (2007). *Neuroethics*.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ao, S. M., & Sandberg, A. (2008). The normativity of memory modification. *Neuroethics*, 1(2), 85-99. doi:10.1007/s12152-008-9009-5.
- Locke, J. (1979).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In P. H. Nidditch (Ed.), Oxford: Clarendon.
- Loftus, E. (2003). Our changeable memories: Leg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Nature Reviews. Neuroscience*, 4, 231-234.
- Loftus, E., & Ketcham, K. (1996). *The myth of repressed memory: False memories and allegations of sexual abuse*. New York: St. Martin's Griffin.
- Lonergan, M., Olivera-Figueroa, L., Pitman, R., & Brunet, A. (2013). Propranolol's effects on the consolidation and reconsolidation of long-term emotional memory in healthy participants: A meta-analysis. *Journal of Psychiatry & Neuroscience*, 38(4), 222-231. doi:10.1503/jpn.120111.
- Lynch, G., Palmer, L. C., & Gall, C. M. (2011). The likelihood of cognitive enhancement. *Pharmacology, Biochemistry, and Behavior*, 99, 116-129.
- Margalit, A. (2002). *The ethics of mem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cGaugh, J. L. (2000). Memory - Century of consolidation. *Science*, 287(5451), 248-251.
- Morgan, C., Southwick, S., Steffian, G., Hazlett, G. A., & Loftus, E. F. (2013). Misinformation can influence memory for recently experienced, highly stressful ev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36(1), 11-17.
- Mullins, J. (1996). Has time rewritten every line? Recovered memory therapy and the potential expansion of psychotherapist liability. *Washington Law Review*, 53, 763-802.
- Myers, K. M., & Davis, M. (2007). Mechanisms of fear extinction. *Molecular Psychiatry*, 12, 120-150.
- Nadel, L., & Sinnott-Armstrong, W. (Eds.). (2012). *Oxford series in neuroscience, law*,

- and philosophy. Memory and law.*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ader, K., & Einarsson, E. O. (2010). Memory reconsolidation: An updat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191(1), 27-41.
- Nader, K., Schafe, G. E., & Le Doux, J. E. (2000). Fear memories require protein synthesis in the amygdala for reconsolidation after retrieval. *Nature*, 406(6797), 722-726.
- Nehlig, A. J. (2010). Is caffeine a cognitive enhancer? *Alzheimer's Disease*, 20(Suppl 1), S85-S94.
- Pansky, A., & Nemets, E. (2012). Enhancing the quantity and accuracy of eyewitness memory via initial memory testing.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Memory and Cognition*, 1, 2-10.
- Parens, E. (2010). The ethics of memory blunting and the narcissism of small differences. *Neuroethics*, 3(2), 99-107.
- Parfit, D. (1984). *Reasons and persons*. Oxford: Clarendon.
- Parker, E., Cahill, L., & McGaugh, J. (2006). A case of unusual autobiographical remembering. *Neurocase*, 12, 35-49.
- Parsons, R. G., & Ressler, K. J. (2013). Implications of memory modulation for post-traumatic stress and fear disorders. *Nature Neuroscience*, 16(2), 146-153.
- Pitman, R. K. (1989).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hormones, and memory. *Biological Psychiatry*, 26(3), 221-223.
- Pitman, R. K. (2011). Will reconsolidation blockade offer a novel treatment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rontiers in Behavioral Neuroscience*, 5:11.
- Pitman, R. K., Sanders, K., Zusman, R., Healy, A., Cheema, F., Lasko, N., et al. (2002). Pilot study of secondary prevention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with propranolol. *Biological Psychiatry*, 51, 189-192.
- Pitman, R.K., Rasmusson, A. M., Koenen, K. C., Shin, L. M., Orr, S. P., Gilbertson, M. W., Milad, M. R., & Liberzon, I. (2012). Biological

- studi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3(11), 769-787.
- Poundja, J., Sanche, S., Tremblay, J., & Brunet, A. (2012). Trauma reactivation under the influence of propranolol.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3. doi:10.3402/ejpt.v3i0.1547.
- 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2003). *Beyond therapy: Biotechnolog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Washington, DC: 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 Ramirez, S., Liu, X., Lin, P. A., Suh, J., Pignatelli, M., Redondo, R. L., Ryan, T. J., & Tonegawa, S. (2013). Creating a false memory in the hippocampus. *Science*, 341(6144), 387-391.
- Rasch, B., & Born, J. (2013). About sleep's role in memory. *Physiological Reviews*, 93, 681-766.
- Repantis, D., Laisney, O., & Heuser, I. (2010a).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s and memantine for neuroenhancement in healthy individuals: A systematic review. *Pharmacological Research*, 61, 473-481.
- Repantis, D., Schlattmann, P., Laisney, O., & Heuser, I. (2010b). Modafinil and methylphenidate for neuroenhancement in healthy individuals: A systematic review. *Pharmacological Research*, 62, 187-206.
- Ricoeur, P. (2004). *Memory, history, forget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ediger III, H. L., Weinstein, Y., & Agarwal, P. (2010). Forgetting: Preliminary considerations. In S. Della Sergio (Ed.), *Forgetting* (pp. 1-22). New York: Psychology Press.
- Roig, M., Nordbrandt, S., Geertsen, S. S., & Nielsen, J. B. (2013). The effects of cardiovascular exercise on human memory: A review with meta-analysis.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37, 1645-1666.
- Sacktor, T. C. (2008). PKM ζ , LTP maintenance, and the dynamic molecular biology of memory storage. *Progress in Brain Research*, 169, 27-40.
- Schacter, D. (1995). Memory distortions: History and current status. In D. Schacter (Ed.), *Memory distortions. How minds, brains and societies reconstruct*

- the pas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acter, D. L. (2002). *The seven sins of memory: How the mind forgets and remembers* (1st ed.). Boston: Houghton Mifflin.
- Schacter, D. L., & Addis, D. R. (2007).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constructive memory: Remembering the past and imagining the future.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62(1481), 773-786.
- Schacter, D. L., & Loftus, E. F. (2013). Memory and law: What can cognitive neuroscience contribute? *Nature Neuroscience*, 16(2), 119-123.
- Schacter, D. L., Addis, D., & Buckner, R. (2007). Remembering the past to imagine the future: The prospective brain. *Nature Reviews. Neuroscience*, 8, 657-661.
- Schechtman, M. (2005). Personal identity and the past. *Philosophy, Psychiatry, & Psychology*, 12(1), 9-22. doi:10.1353/ppp.2005.0032.
- Schiller, D., & Phelps, E. A. (2011). Does reconsolidation occur in humans? *Frontiers in Behavioral Neuroscience*, 5. doi:10.3389/fnbeh.2011.00024.
- Schiller, D., Monfils, M.-H., Raio, C. M., Johnson, D. C., LeDoux, J. E., & Phelps, E. A. (2010). Preventing the return of fear in humans using reconsolidation update mechanisms. *Nature*, 463(7277), 49-53.
- Schudson, M. (1995). Dynamics and distortions in collective memory. In D. Schacter (Ed.), *Memory distortions. How minds, brains and societies reconstruct the past* (pp. 346-364).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hema, R., Sacktor, T. C., & Dudai, Y. (2007). Rapid erasure of long-term memory associations in the cortex by an inhibitor of PKM. *Science*, 317(5840), 951-953.
- Shen, F. (2012). Monetizing memory science: Neuroscience and the future of PTSD litigation. In L. Nadel & W. Sinnott-Armstrong (Eds.), *Oxford series in neuroscience, law, and philosophy. Memory and law* (pp. 325-357).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 M. A., Riby, L. M., Eekelen, J. A., & Foster, J. K. (2011). Glucose

- enhancement of human memory: A comprehensive research review of the glucose memory facilitation effect.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35, 770-783.
- Snead, C. (2011). Memory and punishment. *Vanderbilt Law Review*, 64, 1195-1264.
- Strange, B. A., Kroes, M. C., Fan, J. E., & Dolan, R. J. (2010). Emotion causes targeted forgetting of established memories. *Frontiers in Behavioral Neuroscience*, 4, 175.
- Strawson, G. (2011). *Locke on personal identity: Consciousness and concernment* (Princeton monographs in philoso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uthana, N., & Fried, I. (2014). Deep brain stimulation for enhancement of learning and memory. *Neuroimage*, 85, Part 3, 996-1002.
- Sutton, J. (2012). Memory. In E. Zalta (Ed.),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plato.stanford.edu/entries/memory/>.
-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2008). Guidelines on memory and the law: A report from the Research Board, Leicester. June 2008.
- Thompson, R. F. (2005). In search of memory trac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1), 1-23.
- Thorley, C. (2013). The effects of recent sleep duration, sleep quality, and current sleepiness on eyewitness memory.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7(5), 690-695.
- Tulving, E. (1985). Memory and consciousness. *Canadian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26(1), 1-12.
- Tulving, E. (2002). Episodic memory: From mind to brain. *Annual Review Psychology*, 53, 1-25.
- Vaiva, G., Ducrocq, F., Jezequel, K., Averland, B., Lestavel, P., Brunet, A., & Marmar, C. R. (2003). Immediate treatment with propranolol decrease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wo months after trauma. *Biological Psychiatry*, 54(9), 947-949.

- Vedder, A., & Klaming, L. (2010). Human enhancement for the common good - Using neurotechnologies to improve eyewitness memory. *AJOB Neuroscience*, 1(3), 22-33.
- Vervliet, B., Craske, M. G., & Hermans, D. (2013). Fear extinction and relapse: State of the art.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9, 215-248.
- Walker, M. P., & van der Helm, E. (2009). Overnight therapy? The role of sleep in emotional brain processing. *Psychological Bulletin*, 135, 731-748.
- Wilson, A. E., & Ross, M. (2001). From chump to champ: People's appraisals of their earlier and present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4), 572-584.
- Wixted, J. T. (2004). The psychology and neuroscience of forgett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235-269.
- Worthen, J. B., & Hunt, R. R. (2010). *Mnemonology*. New York: Psychology.

<Abstract>

A Duty to Remember, a Right to Forget? : Memory Manipulations and the Law

Juhee Eom*

In recent years the rapid development of neuroscientific research on memory has made possible in-depth analysis of its complicated nature and manifoldness, albeit the fact that the research still remains in its infancy. Memory according to its own func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declarative, non-declarative and their sub-categories, while the process of the memory phenomenon itself can be divided into the three phases of encoding, consolidation and retrieval. In the case of forgetting, the conceptual and phenomenal counterpart to memory, it cannot simply be merely considered mental deficit, since at the normal level it plays an essential role in human psychic health and well-being. This article argues that remembering and forgetting in fact function as complementary processes, each holding its own individual significance.

Beyond the understanding of the neural phenomena and processes, neuroscientific research pertained to remembering and forgetting are bringing to realization outside interventions to a person's memory with the purpose of intentional alteration, and this raises a range of legal and ethical challenges. Regarding the ethical issues, the authors discuss in depth the report "Beyond Therapy" by the U. S. 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published in 2003. The report takes a bio-conservative stance against artificial memory alterations, speaking in favor of the duty of individuals and societies to

* Ph.D. Konkuk University, Department of law, Associate Professor,
E-mail : juheelight@gmail.com

remember the past “fitly and truly” in light of moral demands with respect to identity, personality, responsibility and self-growth. This paper however, rejects the Council’s tight ethical standards, and instead argue to make normative space for an individual’s moral right to amend intentionally one’s memory as a means through which to overcome traumatizing experiences, despite as well cautioning against various risks concerning unwise memory manipulations.

In the following legal analysis, this article deals with legal liberties associated with memory and memory manipulations with a special focus given to Kolber’s proposition of the new right of “freedom of memory”. The concepts of the right to remember – including the right to be protected against memory erasure-, the right to enhance memory and right to forget are presented as the freedom of memory and their legal scopes and their contents are examined. With the prospect that future developments in memory intervention technology will allow a person’s memory to be erased or manipulated at will, the discussion of duty and responsibilities related to social interests, such as collective memory and witness testimony, conscience was made.

Key Words : Memory, Forgetting, Memory Manipulation, Ethics of Memory, Memory and the Law, right to remember, right to forget, right to enhance memory